



CONSTRUCTION NEWS

하도급공사 정보망 구축

건교부, 계약투명성 확보 추진

건 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 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는 제도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하도급자 현황정보 내용이 부실하고 하도급자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하도급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에 대한 사전통제장치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하도급자가 발주자와 원도급자에게 정보망을 활용, 하도급대상 주요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도급관리대상에는 하도급계약 내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기성금 지급 현황, 설계변경 현황 등이 기재된다.

건교부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상 주요 내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도급관리대상과 보증기관의 건설보증 정보 등과 연계, 불법·불공정 하도급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되면 발주자의 공사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아 관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조세포탈 저가하도급 심사 회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때 제출되는 기성실적 자료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허위실적 등 부조리를 원천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내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까지는 하도급관리정보망 구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특약' 감독 강화

공정위, 추가공사비 전가 등 직권 조사

안 전사고나 추가공사비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 특약조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남광수 하도급 국장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한 미래건설포럼에서 "내년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특약조항 사용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 하도급 계약 내용 중 안전사고 또는 추가공사비를 하도급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특약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남 국장은 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제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위반 유형 건별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동일 유형의 우범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는 가중벌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입찰참가제한과 영업정지에 필요한 누적벌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남 국장은 "저가 하도급에 대한 상시 점



검시시스템도 가동,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240여건에 대한 분석을 끝냈으며 단가 인하 행위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년간 4회 이상 하도급 법령을 위반한 업체 등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부당한 단가 인하 혐의가 많은 업종에 대한 조사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소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를 시공능력 평가액 101~200위 업체 중 70개 업체에 대해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 22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축건물 '에너지설계' 유명무실

건축허가 때 적합성 판정 절차

건물 신축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전기·기계 등 시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합성' 판정 및 반영 절차가 사실상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검토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물 착공 시 도면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업체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반영과정이 사실상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에너지공단이 '6시그마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지사 내 지자체, 건축설계업체, 전기 및기계업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를 면밀히 조사해 밝혀낸 것.

정부는 고유가에 대비, 건축부문에서 근본적으로 사전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건축물의 기계·전기설비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합성을 판단, 보완토록 하고 추후 확인하는 절차다.

공단의 에너지 효율성 검토결과를 건물

건축 시 확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그 근거를 건축법과 건고부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공단 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설계사무소들이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보완 통보를 받고도 공단에만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에는 제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착공 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 및 기계업체들도 사업단가르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전기·기계업체가 공단에만 보완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설계사무소에는 제출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에 더해 건물 허가권을 쥔 지자체들도 건축허가 시 착공도면상 공단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 에너지공단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계·전기부문 전문능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검토시간 부족으로 건물별 반영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을 두고 마련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